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장품 광고 관련 협조요청

1. 평소 우리 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협회 및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처는 최근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17.5월)된 품목과 관련하여 광고사항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 및 협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포탈사 및 쇼핑몰 등에서는 **판매자의 광고사항**이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전달하여 **점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품목**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부터 9호까지의 품목
- * 염모, 제모(크림 등), 탈모, 여드름 기능성화장품

○ **점검 및 협조 사항**(점검 시 제목 및 태그 포함)

- 1) 해당 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시정
- 2) 광고 상세 페이지 중 **의약외품** 표기 사항에 대한 **즉시 시정**
- 3)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또는 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에 대한 시정

4. 아울러, 우리 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제품명 공개** 등 관련 조치할 계획이오니, 이와 같은 유사 건이 재발되지 않고,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협회 및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온라인광고협회,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11번가, 공영홈쇼핑, 네이버, 다음카카오,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쿠팡, 티켓몬스터, 현대홈쇼핑

주무관 **이우규** 사무관 대결 2018. 7. 19. 사이버조사단 전결
이훈 장

협조자

시행 위해사범중앙조사단-5835 (2018. 7. 1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1906 팩스번호 043-719-1900 / leewk1977@korea.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